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담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출석담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해당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담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4조(결산의 심사) “생략” 제65조(구청장등의 출석요구)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담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담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담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생략” 제66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생략”	제64조(결산의 심사) “현행과 같음” 제65조(구청장등의 출석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담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출석담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해당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담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66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현행과 같음”

내부순환도시고속화도로개통에따른방음벽설치
청원에대한심사보고서

1994. 11. 2.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청원인 주소: 마포구 성산2동 595(도시개발아파트 101-1011호)

성명: 이정 자외 38인

나. 소개의원: 윤명규 의원

다. 접수일자: '94. 9. 30.

라. 회부일자: '94. 9. 30.

마. 상정일자: 제25회의회(임시회) 제1차위원회(94.11.2.)상정, 질의토론, 채택

2. 청원요지

본 청원은 1995년에 개통되는 내부순환 도시고속화도로의 개통에 따른 차량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은 밤낮으로 매연, 분진, 소음등의 극심한 정신적, 경제

적, 신체적 피해가 우려되는바, 이러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매연, 분진,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제반시설을 95년 개통과 동시에 설치하여 달라는 청원임.

3. 취지설명의 요지(소개의원 윤명규의원)

본 청원은 내부순환 도시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많은 차량이 이 도로를 이용할 것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서 인접주민들이 밤낮으로 매연, 분진, 소음등에 시달려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신체적 피해가 우려되는바 이러한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는 제반시설을 개통과 동시에 설치해 달라는 내용으로 청원인들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원인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줄것을 청원인과 더불어 의회에 요망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마포구를 관통하는 내부순환 도시고속화 도로의 개통으로 마포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분산효과는 물론 혼잡한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등의 유익한 면도 있다고 사료는 되나, 반면 인근 지역주민들에게는 참기 어려운 극심한 생활 피해도 심히 우려되는 바, 관계부서에서는 주민복지 구현과 예방행정 차원에서도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도시고속화도로 건설 사업주체측에 청원인들의 요구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야 할것으로 사료 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6. 토론요지

전병만 위원 :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

7.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심사결과 의견 : 별 첨

10. 기타사항 : 없 음

내부순환도시고속화도로개통에따른방음벽설치 청원에대한의견서

- 본 청원은 1995년 6월경 개통될 예정에 있는 내부순환 도시고속화 도로의 개통에 따른 차량의 소음, 분진 및 매연등으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들이 개통후 예상되는 생활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방음벽등 제반시설을 개통과 동시에 설치완료해 줄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 본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정당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구청사와 구의회청사 앞을 관통하는 내부순환 도시고속화 도로가 개통되면, 소음피해로 말미암아 구청 업무 여건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고 예상되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도시고속화도로 건설 사업 주체측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방음벽등 제반시설이 개통과 동시에 설치 완료되어 소음공해로 인한 주민생활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994. 11. 3.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 10. 20.